

농림축산식품부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축산물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한 서류제출의 전산화, 등급판정 절차 보완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중량 규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등급판정 제외 대상 신청·확인 및 도축장 경영자의 등급판정 상황 서류 제출 방법에 전자적 방법 문구 추가(안 제 39조제2항, 제43조제2호)
- 나. 돼지 도체의 등급판정 조건 삭제, 등급 계란 중량규격 명칭 변경 및 조문 정비(안 별표 4)
- 다. 포장지·포장용기에 등급의 표시방법 현행화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 개선(안 별표 5)
- 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등급판정 결과 문의처 안내문구 추가
(안 별지 제43호, 제44호, 제44의2호, 제44의3호, 제45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발급받아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이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것”을 “것(이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후 냉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를 “후”로, “돼지 등급판정부위”를 “등급판정부위”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왕란 · 특란 · 대란 · 중란 · 소란”을 “2XL · XL · L · M · S”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닭 · 계란”을 “닭 · 닭부분육 · 오리 · 계란”으로, “표시”를 “표시(부착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2) 중 “규격 중 지름을 30mm이상 50mm이하의 범위”를 “규격 중 지름을 15mm이상 50mm이하의 범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량규격
2XL
XL
L
M
S

별지 제43호서식, 제44호서식, 제44호의2서식, 제44호의3서식 및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u>발급받아야 한다.(이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u>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 제출할 것 3. ~ 5. (생 략)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 ----- ----- 1. (현행과 같음) 2. ----- ----- ---- <u>것(이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u> 3. ~ 5. (현행과 같음)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0.00.00.> <u>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u> 1. (생략) 2. 돼지 도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0.00.00.> <u>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u> 1. (현행과 같음) 2. 돼지 도체

가. 도축한 후 냉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 중 좌반도체(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돼지 등급판정 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를 말한다)의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 1) 도체등급: 도체의 중량과 등 부위 지방두께에 따라 1차 등급을 판정하고 비육 상태, 삼겹살 상태, 지방부착 상태, 지방 침착 정도, 고기의 색깔·조직감, 지방의 색깔·질, 결함 상태 등에 따라 2차 등급을 판정하여 최종 1+, 1, 2등급으로 판정한다.
- 2) 등외등급: 비육 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 3) 등급의 종류: 1+, 1, 2, 등외등급

나.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측정방법 및 측정항목에 따라 냉도체 육질측정을 추가로 실시한다.

- 1) 측정방법: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 중 좌반도체의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이하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15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측정한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부위가 훼손되어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로 측정할 수 있다.
- 2) 측정항목: 근육 내 지방 분포 정도, 근간지방 두께, 고기의 색깔·조직감, 지방의 색깔·조직감 등

3.~ 4. (생략)

5. 계란

물 등을 통한 세척으로 이물질 제거 후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량규격별로 선별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가공용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판정 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

가. 품질등급: 계란의 외부 형태, 기실(공기주머니)의 크기, 흰자 및 노른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2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중량규격: 계란의 중량에 따라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으로 구분한다.

6.~ 8. (생략)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0.00.00.>

등급의 표시방법및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

1. 등급의 표시방법

가. 도축한 후 반도체 중 좌반도체(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를 말한다)의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 1) 도체등급: 도체의 중량과 등 부위 지방두께에 따라 1차 등급을 판정하고 비육 상태, 삼겹살 상태, 지방부착 상태, 지방 침착 정도, 고기의 색깔·조직감, 지방의 색깔·질, 결함 상태 등에 따라 2차 등급을 판정하여 최종 1+, 1, 2등급으로 판정한다.
- 2) 등외등급: 비육 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 3) 등급의 종류: 1+, 1, 2, 등외등급

나.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측정방법 및 측정항목에 따라 냉도체 육질측정을 추가로 실시한다.

- 1) 측정방법: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 중 좌반도체의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이하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15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측정한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부위가 훼손되어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로 측정할 수 있다.
- 2) 측정항목: 근육 내 지방 분포 정도, 근간지방 두께, 고기의 색깔·조직감, 지방의 색깔·조직감 등

3.~ 4. (현행과 같은)

5. 계란

물 등을 통한 세척으로 이물질 제거 후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량규격별로 선별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가공용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판정 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

가. 품질등급: 계란의 외부 형태, 기실(공기주머니)의 크기, 흰자 및 노른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2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중량규격: 계란의 중량에 따라 2XL·XL·L·M·S으로 구분한다.

6.~ 8. (현행과 같은)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0.00.00.>

등급의 표시방법및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

1. 등급의 표시방법

가.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 즉시 등급을 해당 소·돼지·말의 도체, 닭·계란 또는 꿀의 포장지·포장용기에 인력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평가사의 지시를 받아 도축장의 경영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식품소분업자가 본문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 1) 소·말 도체: 육질등급 또는 등외등급만 표시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2) 돼지 도체: 도체등급 또는 등외등급을 표시한다.
- 3) 닭·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 계란 및 꿀: 닭·오리의 도체와 계란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표시하며, 닭 부분육과 꿀은 품질등급을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 크기는 포장지·포장용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다른 검사표시와 겹치지 않도록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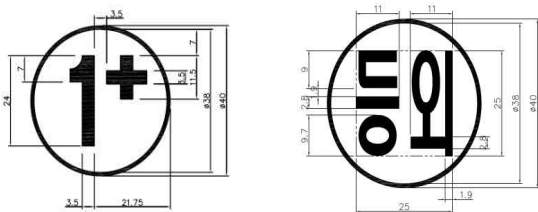
2. (생략)

3. 등급판정인의 규격(예시)

가. 소 도체(생략)

나. 돼지 도체

1) 인력으로 표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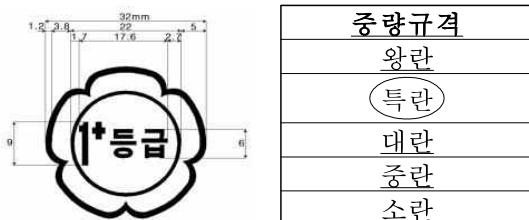
1+: 도체등급

등외: 등외등급

- 2) 기계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의 규격 중 지름을 30mm 이상 50mm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표시할 수 있다.

다. (생략)

라. 계란



1+: 품질등급

특란: 중량규격

마.~바 (생략)

가.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 즉시 등급을 해당 소·돼지·말의 도체, 닭·닭부분육·오리·계란 또는 꿀의 포장지·포장용기에 인력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부착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평가사의 지시를 받아 도축장의 경영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식품소분업자가 본문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 1) 소·말 도체: 육질등급 또는 등외등급만 표시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2) 돼지 도체: 도체등급 또는 등외등급을 표시한다.
- 3) 닭·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 계란 및 꿀: 닭·오리의 도체와 계란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표시하며, 닭 부분육과 꿀은 품질등급을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 크기는 포장지·포장용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다른 검사표시와 겹치지 않도록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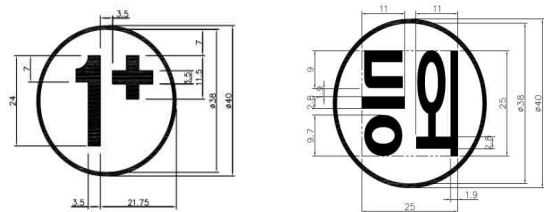
2. (현행과 같음)

3. 등급판정인의 규격(예시)

가. 소 도체(현행과 같음)

나. 돼지 도체

1) 인력으로 표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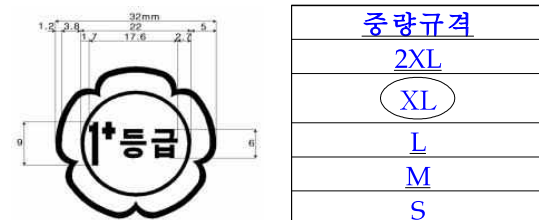
1+: 도체등급

등외: 등외등급

- 2) 기계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의 규격 중 지름을 15mm 이상 50mm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표시할 수 있다.

다. (현행과 같음)

라. 계란



1+: 품질등급

특란: 중량규격

마.~바 (현행과 같음)

※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센터(044-410-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번호: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업태유형	
	주 소			
도 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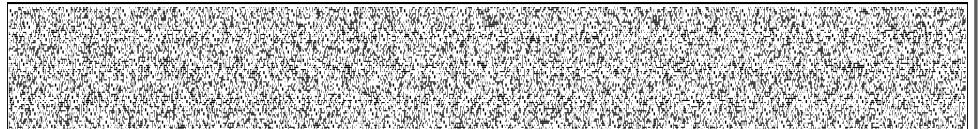
(단위: 두)

이력번호 및 도체 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 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 체번호	등급

전체: 두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납품내역	업태유형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이 확인서의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납품내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센터(044-410-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발급번호:

축산물(말)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업태유형		
	주 소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도체번호		성별	중량		등급	
					육질	육량
계: 두						
납품내역	업태유형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품질평가원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납품내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센터(044-410-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번호: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주 소				
도축장, 축산물가공 업소, 식용란 선별포장업 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용란수집 판매업소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품목(부위)					
일련번호	이력번호	수량	중량규격	품질등급	비고
납품내역	납품처명		품목(부위)	개(수) 또는 중량(kg)	
품질평가원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 이 확인서의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납품내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센터(044-410-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